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03일

동탄1동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 *서	조 *서 1986-01-15	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(반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03
조 *서	손 *혁 2015-04-23	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(반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03